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가단3043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강주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 1.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 1.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6. 9. 27. C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13.9%, 연체금리 연 19.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17. 11. 30. E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8. 4.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85237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4,334,845원과 그 중 12,250,213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는 2020. 1. 22.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인들로는 처(상속지분 3/11)인 피고와 자녀(상속지분 각 2/11)인 G, H, C, 그리고 큰딸의 자녀(상속지분 각 1/11)인 I, J이 있다.

마. 위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2020. 1.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위 협의에 따라 2020. 7. 21.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서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사기죄로 재판받을 당시 C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으로 3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그 대가로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1층 내지 5층 각 547.5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382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2.9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828000분의 47643 글.

